

이달의 초점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 현황과 과제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적용 과제

|마한열|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 현황 및 과제

|주보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과 개선 과제

|이상정|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책 과제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적용 과제¹⁾

Human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Concepts and Challenges

마한열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권은 인간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며,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장된다. 거주시설은 취약성이 부각되는 이들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합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은 개별 권리로 분절하거나, 개별 권리 사이에서 우열을 매길 수 없다(불가분성). 그리고 권리들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가든 다른 권리들과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 자기결정권 역시 인권의 특성인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지니므로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보호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자기결정권이 전제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구분하는 자의적인 경계는 거주시설 이용자를 구분하는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자기결정권은 입소하는 순간부터 맞는 근원적 문제이다. 거주시설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순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후의 충분한 정보 제공, 선택지와 여건의 마련, 자기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동과 이용자의 인권이 충돌한다는 우려를 시민적 연대와 상호 협력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국내에서는 많은 노인, 아동, 장애인이 본인 또

는 가족 구성원의 빈곤, 고령, 장애, 질병, 가족해체 및 갈등 등으로 가족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거주시설 중심 보호를 받고 있다. 국내외 사회적 요

1) 이 글은 이상정, 이민경, 주보혜, 권영지, 강현주, 김성희, 강민희, 임세희, 김혜진, 심석순, 마한열.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내용을 발췌하고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구와 합의를 통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거주시설이 설립되는 목적은 이용자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이다. 이용자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와 인권을 함께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보호와 생존이 우선되다 보니 사생활 보호, 입퇴소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따라서 생존과 자유, 보호와 인권이 선택적·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상충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성이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거주시설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도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거주시설 입퇴소와 관련된 선택에서부터 거주 기간 동안 프로그램 및 서비스 참여, 일상생활 등과 관련 모든 영역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호자 또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의 결정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목적은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특성을 조망함으로써 거주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인권을 실현하고, 궁극적

으로는 거주시설 중심의 전달체계와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인권 중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집중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에서 인권의 기원을 찾아보고, 취약성을 근거로 운영하는 거주시설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려 한다. 또한 불가분성이나 상호의존성과 같은 인권의 특성을 바탕으로 거주시설이 자유와 보호를 선택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어서 자기결정권이 전제하는 인간상을 검토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자기결정권 실현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재확인할 것이다. 자기결정권에 관한 국내외의 법규범을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선택이 가능한 역량의 강화, 자기실현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보의 충분한 제공 등의 요소를 포괄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주시설 현장에서 자주 우려하는 권리의 경합이나 충돌에 대하여 검토하며 인식의 전환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2 거주시설의 목적과 인권의 특성

가. 거주시설의 인권 실현 목적

‘인권’의 실체적인 내용이나 정의는 유동적이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유일한 실체로 존재하기보다 사

회와 환경, 역사와 구성원에 따라 창조되거나 변동되어 온 개념에 가깝다. 이는 역사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주체가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 되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종교로부터 세속적 권한을 분리하고, 왕권으로부터 도시와 상업활동을 보호하며, 근대의 자유권과 참정권의 확립을 거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기까지 권리 또는 인권의 주체와 내용은 거듭 확장되었다. 이러한 확장 뒤에는 사람과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간의 취약성 및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인권을 고찰하고 거주시설의 목적이 인권 실현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모든 인간은 취약하므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 역시 필연적이다. 거주시설은 유독 더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거주시설 밖에서의 삶도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공기처럼 당연하게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인권은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서 시작한다. 18세기에 시작된 인권 담론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인간은 언젠가 죽으며 외부의 위협에 취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Anna Grear, 2010). 인권이 태생적으로 인간의 취약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이 부각되는 집단일수록 인권 보장으로 인한

효과를 가깝게 체감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인권 규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을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의 권리를 거듭 강조하고, 그 책무를 수행해야 할 자들(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가정 등)을 규정한 근거에는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복지의 기원 역시 인간의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김연미(2015)는 이타심, 사회적 연대, 공감과 연민으로부터 취약한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려는 공동체적 합의의 기원을 찾는다. 이타심 덕분에 인간은 서로 협력하고 동맹할 수 있고, 이러한 협력과 동맹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인간이 지구에서 지배적인 종이 되는 데 기여했다는 가설을 통해 이타심의 생물학적·사회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선물을 '주고-받고-되돌려 주는' 반복적인 증거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발생한다고도 보았다. 이러한 이타심과 사회적 연대는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돌봐 주어야 한다는 공동체적 감각의 기원이 된다. 또한 타인의 고통이 심각함을 신뢰하고, 누구든 이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며, 나도 비슷한 고통을 느낄 가능성(유사성)이 있다고 느끼는 공감과 연민도 더 취약한 동료를 돌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사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박찬운(2016)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를 인권의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공존의 감각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찾

는다.

모든 인간이 취약하지만 특정 구성원의 취약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도 취약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찾을 수 있다. 아동과 성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비노인을 가르는 기준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은 19세가 되는 날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고, 65세가 되는 날부터 갑자기 노화하지 않는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고, 역사적으로도 변화해 왔다. 노인, 아동, 장애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은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신체는 취약하고 정신은 제한이 있지만, 유독 비노인, 성인, 장애인만을 전제로 설계된 일상 때문에 노인, 아동, 장애인에게 불편이 발생한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특별히 부각되는 취약한 성질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취약성에 대한 지원 역시 사회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더욱 궁극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인권이 애초에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취약한 이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타심, 사회적 연대, 공감과 연민, 공존의 감각으로부터 사회권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의 기원을 찾을 수 있고, 특정 집단의 취약성을 부각하는 사회적·제도적 작용에서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취약성 또는 취약성에 대한 이해나 인식에서 인권이 기원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취약성과 인권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지에서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다. 사회복지 현장인 거주시설의 목적이나 존립 근거 역시 인권의 실현과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은 거주시설의 사실상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나. 인권의 특성

20세기를 휩쓴 이데올로기 경쟁은 인권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권의 중요성에 주목했던 반면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권에 중점을 두었다(Rosemary Foot, 2010; 조효제, 2018에서 재인용). 인권에 관한 초기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와 재정을 전제로 한다.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방식이 모호하지만,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불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원 분배에 대한 고려 없이 즉각 이행할 수 있다는 도식적 사고가 지배적이었다(Malcolm Langford, 2008; 이주영, 2019에서 재인용).

그러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인 1993년 빈에서 세계인권회의가 개최되었고,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와 기관, 담당자가 모여 사회권과 자유권을 구분하는 인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권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제2부 제3

절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분화된 인식을 극복하면서 인권의 특성으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제시한다.

보편성은 인권이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로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김미옥 외, 2006)는 특성이다. 그런데 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형식적 기회가 보장되는 것만으로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적극적으로 차별을 개선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앞서 취약함이 더 부각되는 집단에서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하고, 인권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정리한 것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불가분성은 인권 일부를 나누어 구현한다고 인권이 보장될 수 없고 전체가 조화롭게 실현될 때 모든 인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는 특성이다(이은주 외, 2010). 한국은 제헌헌법부터 사회권 규정을 두었지만,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는 권리와 의무의 조항들을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나누어 마치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인격으로 파편화되고 분절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개인의 권리란 이 모든 파열된 권리 퍼즐을 모아 놓을 때 보장되는 것이다(김연미, 2015).

‘세계인권선언’ 이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을 제정할 때 국제사회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누려야 인권이 실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의 전문은 공통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조효제, 2016). 냉전 직후인 1993년 세계 각국에서 빈으로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인 사회권, 사회권을 존엄하게 실현하려는 자유권이 하나의 인권 덩어리가 되어 분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떠올라 것이다. 이후로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등의 권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었다(박주원, 2013).

이는 도식적이었던 인권 실현의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과거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개입하지 않는다’ 또는 ‘재량적으로 실현한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를 각각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질이라고 이해했다면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권리 실현의 책무를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주영, 2019).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이 있지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이주영, 2019).

권리가 구분되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가분성에서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더 우위에서 또는 우선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도 도출할 수 있다. 일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모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우위에 있게 되면 두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항상 선순위 권리가 실현되고 후순위 권리는 양보하게 되므로 종국에는 후순위 권리가 사실상 제거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불가분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 개별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호 간에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한수웅, 2022).

만일 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보호를 제공받기 위해 자유를 대가로 지불하거나 자유를 위해 보호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인권의 일부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권이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와 자유를 충돌시키거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에서의 불가분성을 논의하는 의미가 크다.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은 인권 목록의 개별 인권이 각각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으며 실현된다는 특성이다. 자유권은 사회권의 토대 위에서, 사회권은 자유권의 토대 위에서 상호 존재한다(박찬운, 2016). 사회권만 보장되는 인간, 자유권만 보장되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다. 상호의

존적이며 상호관련성이 있는 권리들은 유기적으로 상호보완하며 실현된다.

예를 들어 주거권과 노동권은 선택적으로 나뉘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주거가 보장될 때 안정적인 노동 훈련의 이행이나 노동 참가가 가능해지고, 노동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이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2016년 '적정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적정한 주거(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Leilani Farha, 2016). 파르하는 이 보고서에서 생명권은 안전한 거주지에 대한 권리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안전한 거주지에 대한 권리는 존엄성 및 안전을 존중받고 폭력 없이 살 권리라든 맥락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생명권과 주거권, 주거권과 생명권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권리 구분에 따르면 거주시설에서 실현하는 권리를 사회권 내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로 한정하기 쉽다. 그러나 일상적 자유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사회보장권이 원래 보장하려는 인간다운 삶의 본질이 실현될 수 없고, 사회보장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과 일상적 자유는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3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요소

가. 자기결정의 의의

자기결정권은 구체적·개별적 권리로서 보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권리에 내재한 양상이기도 하다. 헌법에는 자기결정권을 별도의 개별적·구체적 권리로 규정하는 조문을 두지 않은 대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나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서도 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보호 영역 안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김일환, 2014).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자기결정권이 거의 모든 기본권에 내재한 작용 양상이기도 하다(이세주, 2022).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등 대부분 권리의 본질에는 자유로운 자기 의사의 형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김강운, 2006). 이처럼 헌법학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자기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별적·구체적 권리인지, 보장된다면 어느 규정에서 도출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자기결정권의 기본권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법학적 논의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에 국한하지 않는) 인권에 관하여 바로 적용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자기결정권은 인권에서도 개별적·구체적 권리로서 포함될 수도 있고, 다른 인권의 실현 양상으로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인권의 직간접적인 일부로서 자기결정권은 거주시설의 설치 목적 및 존립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같은 인권의 특성도 지닌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실천적인 논의를 위해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의도적으로 확장하여 정의하려 한다. 즉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되는 범위 밖일지라도) 모든 일상에서 발현되는 개별적 결정권임과 동시에 인권에 내재한 권리 실현의 양상이라고 포괄하여 살펴보려 한다.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과 달리 사회복지 현장은 위법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적절하게 인권을 실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다른 맥락이 없는 한 오늘 어떤 모자를 쓸지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거주시설에서는 어떤 모자를 쓸지 소통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고, 이를 잘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특히 거주시설은 이용자들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일상생활의 사소한 자기결정권도 대신 행사되거나 물리적 원인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자기결정권을 더 넓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나. 자기결정의 요소

김현철(2015)은 자기결정을 크게 두 가지 요소

로 나누었다. 하나는 '자기가 하는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에 대한 결정'이다. 자기가 하는 결정의 일차적인 의미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만일 타인의 강압을 못 이겨 결정하는 경우 진정한 자기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기결정은 자기에 대한 사안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전통적으로 자기에 대한 사안은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의미한다(김현철, 2015). 거주시설에서는 타인인 종사자나 보호자가 대신 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주로 문제되긴 하지만, 거주시설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사실상 하나의 선택만 남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전자는 '자기' 결정으로 볼 수 없고, 후자 역시 자기 '결정'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자기결정에 머무르지 않고, 결정한 것이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의 자기실현은 자기결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자기실현은 적극적인 행태를 추구하고 자기결정은 거부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도 포괄하므로 자기결정과 자기실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김강운, 2006). 그러나 이하에서는 자기실현을 적극적 행태 또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좁고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까지 자기실현에 포함해 넓게 인식하려 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를 안전한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다. 자기결정의 주체

인권의 개념이 등장하고 적극적으로 원용된 이후 인권 주체, 인권의 향유자인 인간상은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의사와 이익 보호를 전제한 현행 헌법 질서하에서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인(김일환, 2014)이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향유하는 시민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 시민"이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인간의 권리를 따로 인권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천부인권 이론에서는 인간이 신의 이성을 본뜬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철, 2015).

그러나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질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장애나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는 편견과 감정적 인식이 자기결정권의 주체를 판단할 때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은 비현실적인 전제에 가깝다. 더불어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측정은 매우 자의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고대의 아고라나 중세의 교회는 이성을 지닌 자만이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 시대는 만인이 평등하게 이성적인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만이 그러하였다(김석수, 2008). 시민혁명

이후에도 차티스트 운동(Charterist movement)이 일어난 19세기 중반까지 자본가 계급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20세기 초반의 서프러제트(Suffragette)는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는 운동이었다. 100여 년 뒤인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에서는 투표권 행사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다. 자기결정권의 공적인 행사 방식 중 하나가 투표라면 위 역사적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노동자, 여성, 청소년이 ‘교육을 받지 않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점을 자기결정권 제한의 이유로 들었다.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이성과 합리성을 인종, 직업과 재산, 성별, 나이, 장애와 질병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상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자의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차별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거주시설에 사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자나 거주시설 종사자가 대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에는 이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반영되어 있다. 역으로 거주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을 강화하기도 한다. 즉 사람들의 인식에서 거주시설에 거주해도 되는 사람과 비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판단의 범위는 거의 일치하거나, 사실상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거주시설 내에서 거주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필연적인 당연 과제이자 근원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다.

라. 국내외 관련 규정상 자기결정권

노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노인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은 노인을 위한 5가지(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보호의 원칙에는 노인이 거주 시설에 거주하더라도 사생활을 결정하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은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를 세 번째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자기결정을 위한 노인들의 역량 강화와 연결된다.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생활 결정권과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적인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세우고 제15조에서는 아동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5조 제3항은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강조한다. 제5조의2 제1항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언급한다.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제12조 제1항에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라며 아동의 청취될 권리를 제시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또한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에 관하여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안 양육 배치에 관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견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계획과 실행에 이를 적극 반

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자기결정권은 결정하는 순간에 청취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아동이 표현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로서 서비스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여성과 아동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30조에는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은 의사에 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 제2항은 사생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제3항은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할 것, 제4항과 제5항은 가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은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키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항부터 제5항

은 장애인복지시설 선택권과 이를 위한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60조의 4는 제1항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 시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3항에서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 제4항과 제5항은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노인이나 아동 관련 규정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규정들은 정보의 제공을 특별히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거주시설의 의무도 언급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요소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선언과 더불어 이를 위한 역량의 강화,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반영하는 기준, 정보 제공 등의 요소를 고루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거주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

가. 보호와 자기결정

전통적인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은 일차적으로 사회권을 실현하는 장소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인권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권과 자유권은 서로 분절되어 실현되지 않으며, 순위나 서열 없이 동등하게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불가분성). 김

광병(2016)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분석하면서 이 법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는 사회복지가 사회권과 자유권으로 구분되지 않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것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보호권의 관계로 좁혀 보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통한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반대로 존엄하고 주체적으로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이 실현되어야 한다(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 따라서 현대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보호와 자기결정을 모두 실현해야 비로소 인권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이는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보기 어렵다.

나. 자기실현 지원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강압이나 강요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결정이어야 한다(김현철, 2015).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면 사실상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거주지 반경 100km에 전문 병원이 없다면 또는 육지에서 2~3시간 걸리는 도서 지역에 거주한다면 병원이나 치료 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만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에 더 주목해야 한다(Wehmeyer

& Garner, 2003; 유하얀, 김미옥, 2017에서 재 인용).

선택지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이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은 자기결정권 규정에 바로 이어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두고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선택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결정 내리는 순간’의 권리로만 바라보면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 앞서 자기실현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실현할 수 없는 자기결정권 보장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만일 자신의 결정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내린 결정의 의미를 음미하고, 당사자가 의도했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환경과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기결정으로 인한 결과의 예상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주변의 모니터링과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

다. 거주시설의 인식 전환

보호에 관한 권리 및 이를 이행하는 책무에 대한 논의에서 실천을 위한 방안의 제시 없이 미이행이

나 인권침해에 대해 비난만 하면 거주시설이나 종사자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인권침해 가해자로 여긴다고 반발하기도 하고,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이 오히려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언급하기도 한다.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 안전 등에 대한 권리를 자유나 참여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두고, 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정당화하기도 한다.

프랑스 인권선언이라고도 부르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4조는 “자유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인권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방법을 정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라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 건강, 존엄, 인권을 해친다면 한계에 부딪힌다(민병로, 2012). 사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을 해한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다(민병로, 2012). 이러한 제약은 권리 행사에 내재한 것인데, 거주시설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한다며 예방적으로 일상적인 자기결정을 제약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인은 어디까지나 타인이고 공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위험 구역에서 등산이나 수영을 금지

했는데도 입장했다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수사 구조대를 성가시게 한 것은 타자 가해와 별개의 것이다(김강운, 2006). 거주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거주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사회복지라는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공인이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동안 발생하는 상황들 중에는 타자에 대한 가해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제한하기보다 자기결정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면서도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와 이용자는 대척점에서 있지 않다는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호 연결되고 중첩된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들을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책은 상호 연결되고, 중첩된 거시적 인권 조건 형성을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길밖에 없다(조효제, 2018).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종사자의 노동권은 선택적이거나 배타적으로 실현되는 관계가 아니다. 종사자가 더 안전하게 노동하는 길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지시받거나 이용자와 폭력적인 관계를 맺는 업무가 아니라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다.

5 나가며

거주시설은 취약성이 부각되는 이용자의 보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합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

다. 인권은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보호를 포기하게 해서도 안 된다. 거주시설에서는 이용자 본인이나 다른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기 쉬운데,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도 거주시설의 운영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거주시설에서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선택지와 여건의 마련, 자기실현을 위한 지원, 시민적 연대와 상호 협력으로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논의함으로써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이용자의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시민적 연대를 바탕으로 노동권과 이용자의 인권 사이에서 권리의 경합을 해소하려는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

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 측면에서는 인권이나 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가 거주시설 운영의 통합적인 모니터링 기준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의 거주시설을 비교·분석하는 통합 기준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성폭행·성매매 피해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대상자를 위한 거주시설까지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거주시설 이용자별 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인권을 더 잘 실현하는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거나, 다른 거주시설의 선례를 통해 거주시설 관련 정책이 이용자의 인권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권 보장이 취약한 체계를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㉞

참고문헌

- 김강운. (2006). 자기결정권과 평등. **원광법학**, 22(1). p. 271, p. 277, p. 280.
- 김광병. (2016).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7(1). pp. 96-104.
- 김미옥, 정진경, 김희성, 최영식, 윤덕찬. (2006).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p. 208.
- 김석수. (2008). 자율성과 인권 - 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와철학**, 15. p. 30.
- 김연미. (2015). 법이념으로서 복지국가. **전남대학교법학논총**, 35(3). p. 286, pp. 289-303.
- 김일환. (2014).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5(2). p. 66, p. 84.
- 김현철. (2015).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 19(4). p. 360, p. 365.
-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 민병로. (2012).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전남대학교법학논총**, 32(1). p. 149.
- 박주원. (2013).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현상과인식**, 37(4). pp. 31-34.
- 박찬운. (2016).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 철학. **법과사회**, 52. p. 86, p. 95.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19). **제5-6차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해**. CRC/C/KOR/5-6. para. 21(b), 32(c).
- 이상정, 이민경, 주보혜, 권영지, 강현주, 김성희, 강민희, 임세희, 김혜진, 심석순, 마한열. (2023).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보호-노인, 아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세주. (2022). 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학연구**, 28(4). pp. 227-229.
- 이은주, 박명숙, 김형욱. (2010).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p. 18.
- 이주영. (2019).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노동법연구**, 46. pp. 234-235, 236
- 장은주. (2006).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사회와철학**, 12. p. 191.
- 조효제. (2016).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다문화사회연구 제9권 제2호**. p. 16.
- 조효제. (2018).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pp. 61-62
- 한수웅. (2022). **헌법학 제12판**. 경기: 법문사. p. 529.
- Anna Grear. (2010). Redirecting human rights: Facing the challenge of corporate legal humanity. *Springer*. pp. 137-138
- Foot, Rosemary. (2010). "The Cold War and human rights."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3: End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45-465.

- [조효제. (2018).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 연구**, 1(1). p. 43에서 재인용]
- Leilani Farha. (2016).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71/150*. para 27.
- Malcolm Langford. (2008). “The Justiciability of Social Rights: From Practice to Theory”, in Malcolm Langford(ed.) *Social Rights Jurisprudence: Emerging Trend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3-45: 29-37면. [이주영. (2019).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노동법연구**, 46. pp. 231-232에서 재인용]
- UN. (1991).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united-nations-principles-older-persons#:~:text=Older%20persons%20should%20be%20able%20to%20enjoy%20human%20rights%20and,the%20quality%20of%20their%20lives>에서 2024. 3. 5. 인출.
- Wehmeyer, M. L., and Garner, N. W. (2003). “The impa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ous function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6(4): 255-265. [유하얀, 김미옥. (2012).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3). p. 90에서 재인용]

Human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Concepts and Challenges

Ma, Han Eol

(Duroo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Human rights arise from human vulnerability. They are guaranteed through communal agreements. Residential care facilities must take as their main objectiv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given they represent the locus where the communal agreement to reinforce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those with salient vulnerabilities is translated into practice. Meanwhile, human rights cannot be separated into parts, nor can some of them be prioritized over the others. Also, they are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ares 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y,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Such is the reason why no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restricted on the grounds of the protection of that individual in a residential facility setting. Nor ought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be forsaken for the sake of safeguar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asmuch as the line of demarcation that sets off those living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closely mirrors the arbitrary line defining the rational, reasoning agent that self-determination presuppos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omes a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residents come to confront from the moment they are placed in these facilities. Residential care facilities must be committed to ensuring that their residents have not only chance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also options to choose from and sufficient contextual information based on which they can put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to action, as well as supporting them so that they can live in a self-actualizing way. Additionally, ways should be sought, through collaboration with civil society, to bring about changes in perspective toward conflicts of interest that arise involving the resid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are worker's roles.